

# 202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변경 -



# contents

01. 사업변경 주요내용

02. 사업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

0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검토

04. 자주하는 질문 및 사업변경 사례

# 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주요내용

# 추진목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 변경을 사전에 관리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

###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변경 대상

사업 선정기관은 사업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지원사업의 **중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잔액 또는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지원공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단,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미만 증가 및 에너지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보고)
3. **동일 사업선정기관**(기초지자체 단위 또는 중앙행정·공공기관-해당기관) 내의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4. 추가지원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변경 대상

사업 선정기관은 사업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8. 지원 대상사업을 다른 사업선정기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9.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사업변경 대상이 아닌 사항(단순 열원변경, 재질변경, 형식변경 등)은 정산 시 일괄보고

(예시) 열원변경 : 보일러 열원 변경(전기 보일러 → 기름 보일러), 냉난방장치 열원 변경(GHP → EHP)

재질변경 : 창호 재질 변경(PVC → AL), 외벽 마감재 변경(드라이비트 → 스타코)

형식변경 : 천장형 → 스탠드형

#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공사 사업비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단, 동일 필수공사의 변경으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는 제외)

※ 중대한 변경 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하여 사업공모 선정 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의 변동 검토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 공사	필수	건축	① 내·외부 단열보강 ② 바닥단열 및 난방 ③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	④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⑤ 고효율 냉난방장치 ⑥ 고효율보일러 ⑦ 고효율조명(LED) ⑧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⑩ Cool Roof ⑪ 선도기술(Solar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⑫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가지원 공사	부대	구조안전보강,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관리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등	

#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공사 사업비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단, 동일 필수공사의 변경으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는 제외)

※ 중대한 변경 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하여 사업공모 선정 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의 변동 검토

(예시) 에너지공사 사업비가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기준 〉

구 분		사업비(천원)
필수 공사	벽체	40,000
	지붕	20,000
	냉난방장치	10,000
	신재생에너지	20,000
선택 공사	일사조절장치	5,000
	순간온수기	5,000
에너지공사 합계		100,000



25%  
감소

〈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

구 분		사업비(천원)
필수 공사	벽체	35,000
	지붕	20,000
	냉난방장치	5,000
	신재생에너지	10,000
선택 공사	일사조절장치	2,000
	순간온수기	3,000
에너지공사 합계		75,000

#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공사 사업비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단, 동일 필수공사의 변경으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는 제외)

※ 중대한 변경 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하여 사업공모 선정 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의 변동 검토

## (예시)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물량 감소 또는 공사내역 제외하는 경우
  - 벽체 단열 물량 감소(500m<sup>2</sup> → 300m<sup>2</sup>)
- \* 단, 변경 물량이 실시설계에 따른 전체 물량인 경우는 제외
- 공사 내역 변경
  - 창호공사 제외 → 보일러 공사 신규 적용

## (예시)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

- 창호 종류 변경(물량은 동일한 경우)
  - (신청) 28mm 로이복층유리
  - (변경) **열관류율이 동등 이상**의 24mm 로이복층유리

필수공사 내역이 동일하며, 창호 두께가 변경되었으나, 열관류율이 동등 이상이므로 중대한 변경 아님

## 경미한 사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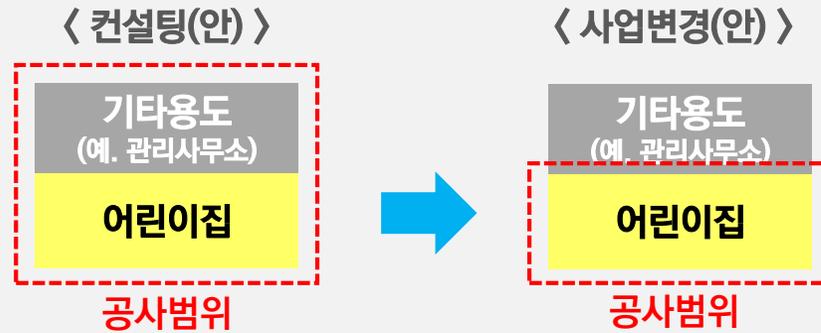
사업변경 대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성능 변동이 미미하는 등 효율적인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검토·승인 후 심의위원회 및 장관에게 보고 처리 가능함.**

1. 총 사업비 초과 또는 현장여건 등으로 공사내역 또는 공사 범위 조정 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복합용도의 건물**로 GR 사업 지원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조정
  - 나. **비냉난방 공간** 부분의 조정
  - 다. 해당 공사의 **전체 면적**(실시 설계 후의 면적 기준)의 **5% 이내 감소**(다만, 모든 필수공사 면적 조정의 10% 초과할 수 없음)
2. 필수공사 내역 조정으로 사업 신청 당시의 **에너지 절감계획이 개선되거나, 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폐열회수형환기장치를 미적용하는 경우는 사업변경 심의 필요**)
3. 타 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필수공사를 동등 이상으로 계획 또는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지원공사비가 30%를 초과하거나, 에너지공사비가 20%로 감소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봄)
4.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 이상 증가하나, 총 공사비의 30% 이하인 경우**

# 경미한 사항이란?

## 경미한 사항(상세)

①-가 복합용도의 건물로 GR 사업 지원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조정



①-나 비난방 공간 부분의 조정 [☞ 참고, 기계실, 샤프트, 방풍실 등 물량 감소 부분](#)

①-다 해당 공사의 전체 면적의 5% 이내 감소. 다만, 모든 필수공사 면적 조정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미한 사항 ○

- 벽체 단열 면적 2% 감소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면적 4% 감소

기술요소별 5% 이내 감소 /  
전체 10% 이내 감소

### 경미한 사항 ×

- 벽체 단열 면적 6% 감소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면적 2% 감소

벽체 단열 요소 5% 초과 감소

### 경미한 사항 ×

- 벽체 단열 면적 4% 감소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면적 4% 감소
- 조명 면적 3% 감소

전체 10% 초과 감소

# 경미한 사항이란?

## 경미한 사항(상세)

- ② 필수공사 내역 조정으로 사업 신청 당시의 에너지 절감계획이 개선되거나, 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제외할 경우는 사업변경 심의 필요)

### 경미한 사항 ○

- 1) 변경사항  
- 벽체공사 제외 / 지붕공사 신설
- 2) 에너지성능 분석(1차에너지소요량)

개선전	100 (kWh/m <sup>2</sup> y)
개선후(컨설팅)	70 (kWh/m <sup>2</sup> y)
개선후(설계안)	72 (kWh/m <sup>2</sup> y)



컨설팅 대비 에너지성능이 약 2.9% 하락

### 경미한 사항 ×

- 1) 변경사항  
- 지붕공사 신설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물량 감소(일부 실 제외)
- 2) 에너지성능 분석(1차에너지소요량)

개선전	100 (kWh/m <sup>2</sup> y)
개선후(컨설팅)	70 (kWh/m <sup>2</sup> y)
개선후(설계안)	60 (kWh/m <sup>2</sup> y)



컨설팅 대비 에너지성능이 약 14.3% 개선되었지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물량 감소로 심의 필요

# 경미한 사항이란?

## 경미한 사항(상세)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③ 타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필수공사를 동등 이상으로 계획 또는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지원공사비가 30% 초과하거나, 에너지공사비가 20%로 감소하더라도 경미한 사항)

(예시) 타 사업비로 창호교체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컨설팅(안) : 추가지원공사비 비율25% 〉

구분		사업비
에너지 공사	벽체 단열공사	30
	창호공사	25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20
추가 지원 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5
	건축부대공사	10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10
총 공사비		100



〈 사업변경(안) : 추가지원공사비 비율 33.3% 〉

구분		사업비
에너지 공사	벽체 단열공사	30
	창호공사	25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20
추가 지원 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5
	건축부대공사	10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10
총 공사비		75

# 경미한 사항이란?

## 경미한 사항(상세)

④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이상 증가**하나, **총 공사비의 30% 이하**인 경우

(예시) 벽체 단열공사 내역 일부가 건축부대공사비로 편성되는 경우

### 〈 컨설팅 〉

구분		사업비
에너지 공사	벽체 단열공사	30
	창호공사	30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20
추가 지원 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5
	건축부대공사	5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10
총 공사비		100



### 〈 사업변경 〉

구분		사업비
에너지 공사	벽체 단열공사	25
	창호공사	30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20
추가 지원 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5
	건축부대공사	10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10
총 공사비		100

추가지원공사비가 25% 증가(20 → 25)하나, 총 공사비의 30% 이하(25%)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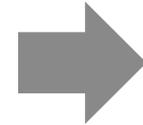
## 사업변경 시 유의사항

- ✓ 공사 내역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 공사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에너지 공사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공사를 실시함을 원칙
- ✓ 다만, 현장 여건상 에너지 공사에 우선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 기술요소를 제외하는 경우, **공법 변경 등 대체 방안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예시) 벽체 내단열 → 외단열 / 천장형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벽부형, 스탠드형
- ✓ 변경되는 공사내역(필수공사) 확인 및 **명확한 사유 기재** 요망
- ✓ 총 공사비 증액 시 **국비 추가지원은 불가**하며, 추가 금액을 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자체 처리 가능(단, 사업 준공 및 정산보고 시 변경내용은 일괄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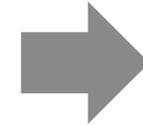
0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절차

# 사업변경 절차



변경신청



변경신청



## 1) 기초 지자체

- 변경 사항 확인 및 내용 작성  
(종합사업지원의 검토 의견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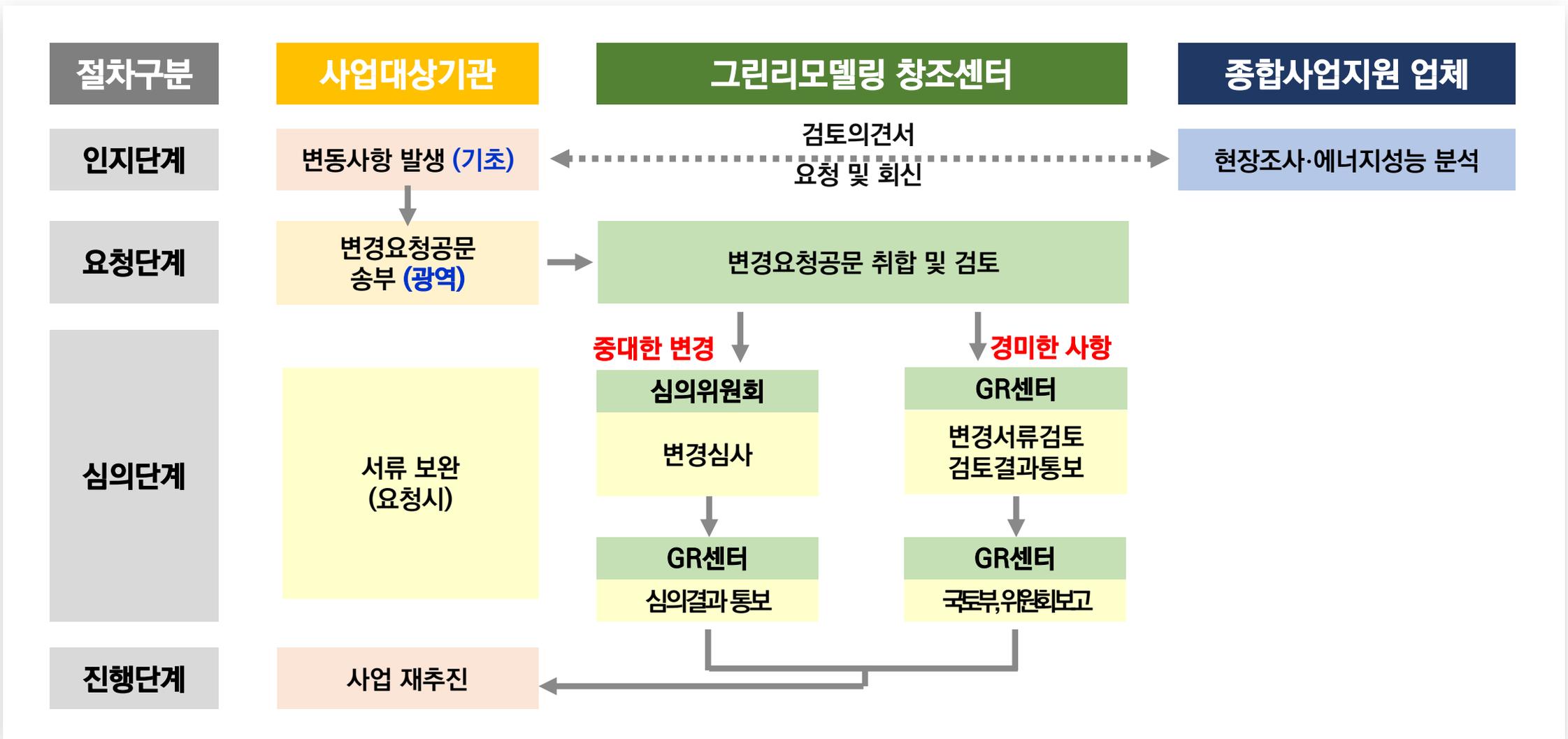
## 2) 광역 지자체

- **변경내용 적정성\* 및 보완사항 검토**
  - 사업변경 타당성
  - 대체공사의 적정성
  - 공사비용 적정성 등

## 3) 그린리모델링센터

- 변경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수정요청
-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결과 통보  
(광역지자체)

# 사업변경 절차



※ 사업변경 절차는 약 1-2개월 소요됨(단, 제출서류 미비 및 현장조사·기술자문 절차 진행 시 사업변경기간 증가) / 심의위원회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예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변경 절차

### 신청방법

- 사업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의 장은 변경사항 발생 시 **유선협의 후**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 공문으로 접수**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경유한 접수 필수 / \*\*수신인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제출시기

- 사업변동 사항 발생 즉시(**임의 사업변경 실행 후 사업변경 절차 절대 금지**)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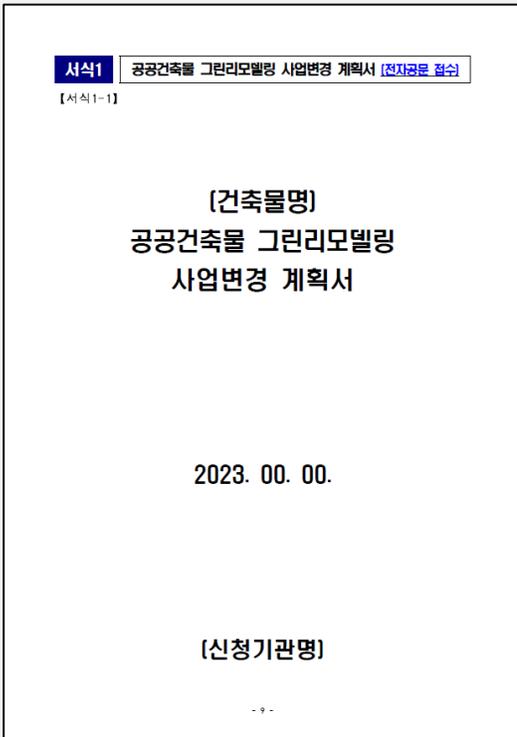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가이드라인」 [서식1] 사업변경 계획서
- 컨설팅 업체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에너지성능 관련파일(ECO2-OD), 관련 사진(필요시), 견적서(필요시)

\*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의 용량이 클 경우, 첨부서류는 이메일 발송 가능(greenremodeling@kal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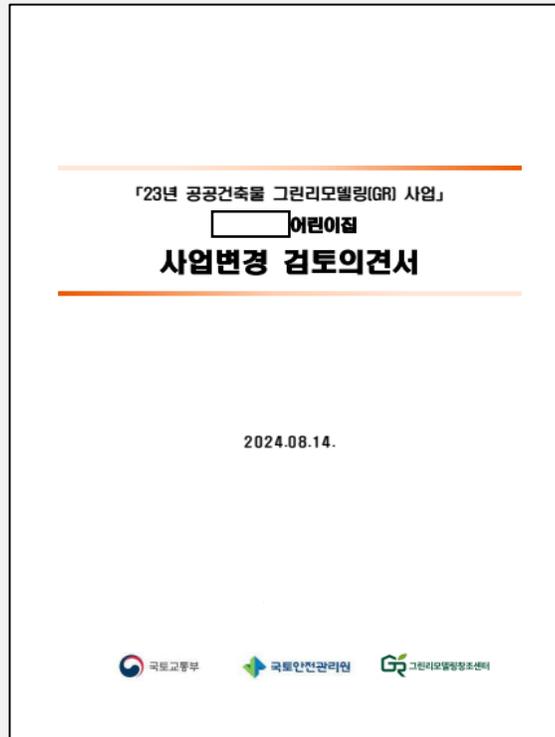
0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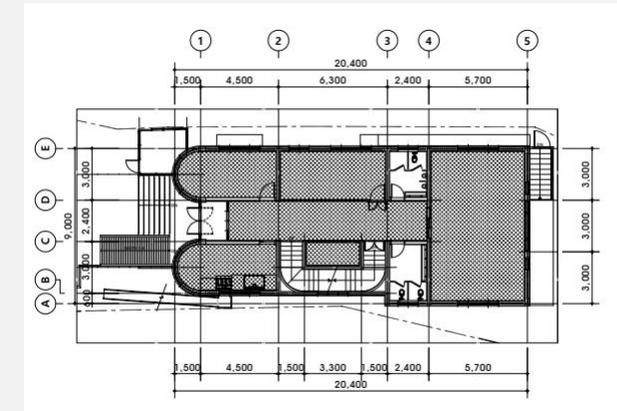
**사업변경계획서**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도면 및 내역서 등**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업명: [원리모델링사업]      단위: 일제단위(단위:천원)(₩100,000)

구분	세목명	총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총공사	구분비	비고
재료비	도장료	99,914,160	79,483,904	8,118,963	11,840,246	472,087		
	건축물 부속물(소)	99,914,160	79,483,904	8,118,963	11,840,246	472,087		
	〔소계〕	99,914,160	79,483,904	8,118,963	11,840,246	472,087		
노무비	역입소 노무비	23,903,432	9,977,945	5,298,403	4,581,082	4,146,172		
	건설소 노무비	3,321,732	3,297,222	866,194	1,881,572	522,795	직접노무비 * 12.8%	
	〔소계〕	27,225,164	13,275,167	6,164,597	6,462,654	4,668,967		
운영비용	설비비	53,299	53,299	0	0	0		
	상생비용	3,126,488	293,073	2,933,415	344,093	166,122	노무비 * 3.8%	
	교통비용	373,867	113,475	59,380	47,198	47,198	노무비 * 1.0%	
	국민건강보험료	990,841	353,718	193,736	394,299	147,088	직접노무비 * 3.4%	
	국민연금보험료	1,257,768	448,007	235,773	386,276	186,712	직접노무비 * 4.5%	
	퇴직금비용	348,998	228,482	126,336			직접노무비 * 2.3%	
	산안양보험료	3,611,027	2,621,235	395,373	594,419		직접노무비 * 9% + 연공차액비 * 2.8%	
	노동청장기보험료	126,111	45,896	24,052	39,463	19,647	건설노무비 * 12.8%	
	직업교육비용							
	건설기재비용	6,822,087	4,717,384	728,916	1,118,287	287,498	재료비(노무비) * 3.2%	
기타비용	99,438	362,100	49,012			재료비(노무비) * 3.2%		

# 사업변경 계획서

## 제출서류\_기초지자체 작성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가이드라인」 [서식1] 사업변경 계획서

## 검토사항\_광역지자체 검토

- 변경사유 타당성 검토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대체 적용방안 적정성 검토
- 도면, 내역서 일치여부 검토

2025년 사업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25. 00. 00.

**[신청기관명]**

### 1. 기본현황

변경개요

구 분	내 용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주 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000㎡ / 지하0층, 지상0층	용도	ex) 외토시설/어린이집/보육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00년	경과연수 ex) 00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중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신청당시 신청내역 적용여부	기밀성	(강조)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배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녹색건축물 전환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추가 지방비	<input type="checkbox"/> 적용(000천원)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선도기술	<input type="checkbox"/> 적용(0개소)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참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 2. 세부현황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처별 활용 등
2. 사업주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00%),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 사업변경 계획서

## 1. 기본현황

### □ 변경개요

구분	내용				
건축물명	① ex) OO 어린이집				
주소	②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③ ex) 000㎡ / 지하0층, 지상0층	용도	④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⑤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⑥ ex) '00년	경과연수	⑦ ex) 00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⑧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⑨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⑩ ex) O/X
선정당시 신청내역 적용여부	⑪ 기밀성	(참호)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배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녹색건축물 전환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추가 지방비	<input type="checkbox"/> 적용(000천원)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선도기술	<input type="checkbox"/> 적용(0개소)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 □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⑫ 변경 전(A)			⑬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참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

- ① 대상 시설명 기재
- ② 도로명 주소 기재
- ③ 건축물 대장의 면적 및 규모 기재
- ④ 그린리모델링 대상 용도 기재
- ⑤ 그린리모델링 사업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기재
- ⑥ 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재
- ⑦ 사용승인일 부터 현재까지 기간
- ⑧ 총 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 → O / 동일 → X
- ⑨ 필수공사 변경 여부, O, X로 기재
- ⑩ 에너지공사비 감소 여부, O, X로 기재
- ⑪ 그린리모델링 가점사항에 대한 적용여부 표기
- ⑫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상의 사업비 기재
- ⑬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기재

# 사업변경 계획서

## 2. 세부현황

### □ 변경내용

<b>1. 사업변경 취지</b>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b>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b>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00%),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 〈작성 방법 및 예시〉

#### ① 사업변경 취지 상세히 기재

- 낙찰차액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000천원)을 활용하여 선택공사인 일사조절장치 설치
- 필수공사 변경하는 경우
  - 실시설계에 따른 단가 및 물량 반영으로 총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사업 추진을 위하여 OO공사 제외

#### ②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기재

- 설계 단계 완료
  - 설계 중(약 80% 수행)으로, 사업변경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완료 예정

# 사업변경 계획서

**작성 예시**

## 2. 세부현황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시행하려했던 외단열+미장스톤 공사 및 지붕 내단열 공사를 아래 사유로 부득이 미진행 하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50센티) 미달</li> <li>2) 현장여건이 불합리하여 인·허가(대수선)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가</li> </ul> </li> <li>• 당초 계획된 에너지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사가 불가하여 다른 에너지공사(필수, 선택) 중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절감이 가능한 공사 등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출입구 및 중문 :2개소</li> <li>2) 고효율냉방기 : 보육실_106.3㎡</li> <li>3) 일사조절장치 : 외부창문_24.7㎡</li> </ul> </li> </ul>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09 : 사업계획변경 심의</li> <li>• 2023. 10 :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li> <li>• 2023. 11 : 착공</li> <li>• 2023. 12 : 준공</li> </ul>

# 사업변경 계획서

## 작성 예시

### 2. 세부현황

#### □ 변경내용

##### 1. 사업변경 취지

- 실시설계 후 공사내역이 일부 변동되었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변경을 신청함.  
\* 단가조정으로 총 공사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벽체, 지붕, 창호, 문 공사) 실시설계 후 전체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음.
-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구조안전보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재현주기별 지진작용시 구조요소의 목표성능 수준을 불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안전보강(내진보강) 공사 추가 설계 실시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실시설계 후 기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던 지하층, 창고 등이 사전조사 컨설팅 당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물량 및 공사비 감소(그린리모델링 공사기간 내 추후 공사 예정)

# 사업변경 계획서

###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사	벽체 (외 단열)	ex)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내단열 변경/동일/미 적용 공사면적 및 공사비 증가/감소	ex) 실제 현장 물량 반영 단가조정으로 공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 단열)			
	바닥 (단열·난방개선)	ex) 바닥난방배관 공사 적용	ex) 미적용	ex)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미적용
	창호	ex) 24mm 로이복층유리 적용	ex)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미적용	ex)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녹찰차액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상능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 〈작성 방법 및 예시〉

#### ① [변경 전] 사업계획(안) 기재

-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에 따른 사업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작성(물량, 자재 등)
  - 벽체 : 외단열 공사 000m<sup>2</sup> 적용(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 ② [변경 후] 사업내역 기재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내역 기재
  - 벽체 : 내단열 공사 000m<sup>2</sup> 적용  
(기존 단열재 위 PF보드 80T 적용)  
공사면적 감소 및 공사비 감소
  - 사유 : 외단열 적용 시 단가 상승에 따라 총공사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내단열로 변경하여 공사 진행

# 사업변경 계획서

작성 예시

###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사	벽체	외단열	미설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50센티) 미달로 공사불가
	지붕	지붕단열	미설치	지붕공사시 대수선공사에 포함되어 장애인시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부대공사 다수 필요하며, 지붕이 삼각지붕이라 내단열 공사가 쉽지 않음
	바닥	바닥난방	미설치	창호 교체와 고효율보일러 교체로 바닥난방 개선
	창호	창호	동일	PVC 로이복층
	문	미반영	주출입구 및 중문 교체	주출입구 및 중문의 기밀저하로 외부 공기 유입이 많아 현재 열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미반영	미반영	-
	고효율 냉난방장치	미반영	3개소 설치 (개별방식_EHP)	기존의 냉난방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고효율의 냉난방장치를 교체·추가 설치함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고효율보일러(콘덴싱)	가스보일러(4대) (친환경보일러, 27000k/cal)	보일러기기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효율 및 에너지 성능이 저하되어 개선필요
	조명(LED)	미반영	LED조명 설치	조도량 부족으로 인한 실내환경 개선필요

# 사업변경 계획서

## 4. 세부변동 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후-전)	금액 (후-전)		
필수요소	건축	외단열	500㎡	80,000	280㎡	15,000	-250㎡	-15,000
		내단열						
		지붕	외단열					
		내단열						
		바닥	단열					
	기타	창호	난방개선					
		환기	제열최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 MS						
		(또는 전자식 열격결합기)						
		Cool Roof(쿨루프)						
		식도기	식도기					
ISola Tree, 수분공급,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적정가설비								
필수공사 소계(1)	-	-	-	-	-	-		
권고요소	건축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환경성 선언제품	벽지					
		마감재	천장재					
		(EPD저 총)	바닥재					
	기타	창호기밀시험						
		스마트 메터사원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세면기					
			변기					
선택요소	선택공사 소계(2)	-	-	-	-	-		
추진요소	건축	기준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구조안전보장						
		석연 조사 및 제거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공사						
	기타	GR 관련 전기공사						
		부대공사 소계(3)	-	-	-	-	-	
		도시지역 활용(4)	-	-	-	-	-	
		직접공사비 소계(1+2+3+4)	-	-	-	-	-	
		간접노무비	-	-	-	-	-	
기타비용	실적 및 감리	기타결리비	-	-	-	-	-	
		일반관리비	-	-	-	-	-	
		이윤	-	-	-	-	-	
		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	-	-	-	-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안전교육	설계비						
		설계공모대행						
		감리비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동지도비 등					
		② 기타비용 소계	-	-	-	-	-	
③ 부가치세	-	-	-	-	-			
총 공사비 합계(①+②+③)	-	-	-	-	-			

\* [참고\_세부변동 계획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물량 및 금액 작성요함

### <작성 방법 및 예시>

#### ① [변경 전] 물량 및 금액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기준으로 작성

#### ② [변경 후] 물량 및 금액

- 사업변경 공사내역서 및 도면 기준으로 작성

#### ③ [변경 증감] 물량 및 금액

- '변경후' - '변경전' 값 기재

#### ※ 유의사항

- 단위 : 천원 단위로 기재
- 사업변경 계획서 양식의 '세부변동 계획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금액 작성 필요

# 사업변경 계획서

참고		세부변동 계획(물량 및 금액) 작성 방법	
구분		작성방법	비고
변경 전	공통	- '사업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물량·금액으로 작성 * 단, 이전 사업변경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당시의 최종 물량·금액(변경후)으로 작성	-
	필수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변경 후	필수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 (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기술요소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선택	- 실시설계에 따른 물량으로 작성	-
부대 공사	필수	-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직접공사비 (공종별 내역) 부분 중 해당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금액 반영	* 관급자재 등 부가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선택	- 공사 적용 시 1석으로 작성하고, 공사 미적용 시 공란	-
부속비	도서활용	- 설계내역서 상 별도의 해상운송비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영	* 도서지역만 해당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간접노무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간접노무비 금액으로 작성	-
	기타경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경비합계 중 직접경비를 뺀 금액으로 작성	-
	일반관리비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금액으로 작성	-
	이윤	- 설계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등)의 원가계산서 상 이윤 금액으로 작성	-
	이사 및 임차비	- 이사비용 및 임차비용 반영	* 사업변경 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설계비	- 설계비용 반영	- 변경 전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또는 추정되는 비율로 작성 가능
	설계 공모대상	-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공모안 작성비용, 상금, 기타 보상금 등의 금액을 반영	
	감리비	- 감리비용 반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반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반영
	부가가치세	-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관급자재, 기타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총합으로 작성	-

## 〈작성 방법 및 예시〉

### ① [변경 전] 물량 및 금액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서 기준으로 작성

### ② [변경 후] 물량 및 금액

- 사업변경 공사내역서 및 도면 기준으로 작성

### ③ [변경 증감] 물량 및 금액

- '변경후' - '변경전' 값 기재

### ※ 유의사항

- 단위 : 천원 단위로 기재
- 사업변경 계획서 양식의 '세부변동 계획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금액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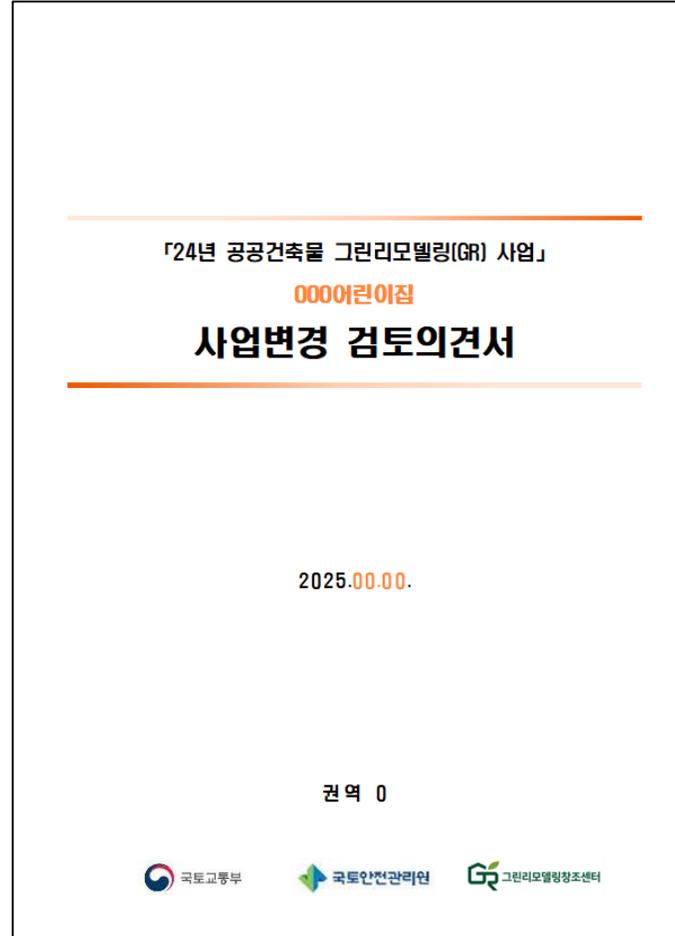
#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 제출서류\_종합사업지원 작성

### ➤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 검토사항\_광역지자체 검토

### ➤ 사업변경 계획서 및 도면, 내역서 일치 여부 검토



사업명	000어린이집			
설계사/시공사		지치구		
제출 서류		지치구 담당자		
서류 수령일		의견발송일		
작성자		확인자		
사업변경 주요 사유				
1) 사업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적합/부적합)	비고	
①	에너지공사 사업비가 20% 이상 감소 여부	적합	약 00.0% 감소	
②	사업변경으로 추가지침 공사비 비율 30% 초과 여부	적합	약 00.0%	
③	중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 비율 40% 미만 여부 - '23년 예산부터 적용	적합	약 00.0%	
④	추가지침 공사비가 신설대비 20%이상 증가 여부 - 추가지침 공사비가 신설대비 20%미만 증가 후 에너지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결산 시 별도보고	적합	약 25.0% 증가	
2)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NO	GR 기술 요소	사건조사 컨설팅 내용	설계도서 검토의견	비고 (사유)
1	외벽	▶ 외단열 or 내단열, 00㎡(정체) ▶ 적용 열관류율: 0.32W/mK 이하	▶ 적용부품: 내단열 적용 확인 ▶ 적용량: 381.53㎡ 확인 ▶ 외벽 열관류율: 0.32W/mK	
2	지붕 바닥	▶ 지붕단열 적용량: 00㎡(정체) ▶ 바닥단열 적용량: 00㎡(정체) ▶ 적용 열관류율: 0.18W/mK 이하(지붕-외기포집) 0.31W/mK 이하(바닥-외기포집) 반영	▶ 지붕단열 적용량: 00㎡ 적용확인 ▶ 바닥단열 적용량: 00㎡ 적용확인 ▶ 적용 열관류율: 0.102W/mK 이하(지붕-외기포집) 바닥 열관류율: 0.569W/mK - 미달	
3	항초 및 출입문	▶ 항초 적용량: 00㎡(정체) 문 적용량: 0개소 (무출입구 0, 현관0, 실내문 0) ▶ 적용 열관류율: 1.8W/mK 이하	▶ 항초 적용량: 00㎡ - 적용확인 문 적용량: 0개소 - 적용확인 ▶ 적용 열관류율: 1.8W/mK 이하 확인	
4	계열화수 냉난방기	▶ 적용량: 00㎡(정체) ▶ 적용성능: 3500CMH 년방 68%, 난방 72% 10500CMH 년방 54%, 난방 70%	▶ 적용량: 00㎡(정체, 미충족설계유량) ▶ 적용성능: 400 년방 60.0%, 난방 70.4% 1000 년방 60.7%, 난방 70.0%	
5	EHP	▶ 적용량: 00㎡(정체) ▶ 난방 COP: 4.3, 난방 COP: 3.9 적용	▶ 적용량: 00㎡(정체, 미충족설계유량) ▶ 난방 COP: 4.10, 난방 4.30	

# 04

자주하는 질문 및 사업변경 사례

## 자주하는 질문

### Q1.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국비 증액은 불가하며, 지방비는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 가능

### Q2. 공사 물량이 일부 변경되는 것도 사업변경이 필요한가요?

☞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실제 물량 반영의 조정은 사업변경 대상이 아님  
- 단, 일부 실의 면적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변경 필요

## 자주하는 질문

### Q3.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한가요?

☞ **사업비 전용 가능.**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A 건물(국비)	B 건물(국비)	A 건물(국비)	B 건물(국비)
100백만원	200백만원	150백만원	150백만원

# 자주하는 질문

## Q4. 사업취소한 건물에 대해 취소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한가요?

☞ 『보조금법』 제21조에 따른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취소할 경우, 사업비 전용이 가능. 다만, **심의위원회에 사전 승인이 필요**

###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사항

1. 대상 선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상 선정 이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3. 대상 선정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대상 선정 이후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의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용하여 사용이 불가함.

## 자주하는 질문

### Q5.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부대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GR 관련 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기타공사 추진 가능.**

- **단,** 특별한 사유 없이 필수공사(에너지공사)가 누락된 상태로 낙찰차액 발생한 경우는 **필수공사를 우선 실시**해야 함

## 자주하는 질문

### Q6. 이사비 및 임차비용은 지원가능한가요?

☞ 임시공간 임차비용<sup>1)</sup> 과 이사비용<sup>2)</sup> 은 지원가능

1) 병원의 경우, 공사 진행을 위한 재실환자 이송 인건비 지원가능

2) 공사범위에 기존 숙소가 포함되는 경우, 임시 숙소 임차료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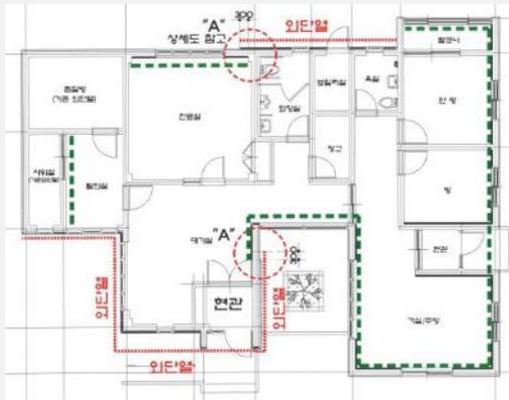
- 단, 차량운행비(통학, 출퇴근), 집기류 구매 등은 지원불가

# 사업변경 사례

## ▷ 벽체 단열 교차시공에 따른 열교현상 발생 우려로 인한 **재심**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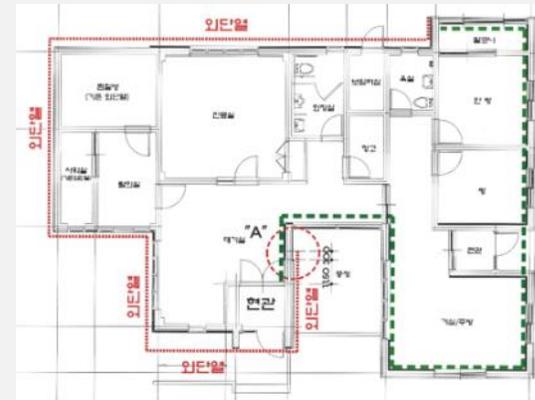
### ◆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 (1차 변경심의) 건물의 벽체 단열을 내외부 교차 적용하고, 일부 실은 미적용하여 사업변경을 신청  
 ↳ 벽체 단열공법의 빈번한 교차로 인한 결로발생 우려로 **‘단일공법 동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유보**
- (2차 변경심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벽체 단열공법의 교차를 최소화**하고, 단열 교차 부위에 대하여 **단열재 교차시공을 통해 열교현상을 최소화**하여 재설계해 사업변경 재심의 ↳ **적합**



#### 1차 변경

- 1) 외단열 적용부위
  - 외장재 오염부위
  - 화장실 및 욕실 등
- 2) 내단열 적용부위
  - 외단열과 찜질방을 제외한 부위
- 3) 단열 미적용 부위
  - 찜질방



#### 2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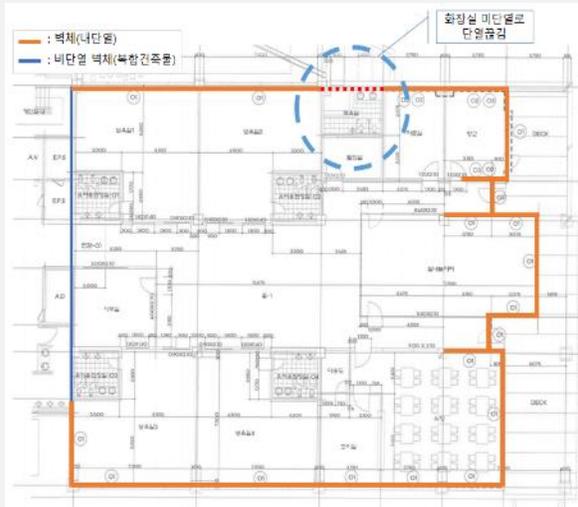
- 1) 외단열 적용부위
  - 전기설비로 내단열 시공이 어려운 현관
  - 화장실 및 욕실 등
  - 찜질방
- 2) 내단열 적용부위
  - 외단열을 제외한 부위
- 3) 단열 미적용 부위
  - 없음

# 사업변경 사례

## ▷ 벽체 내단열 시공 시 **비냉난방공간의 단열라인 끊김**에 대한 사업변경 사례(경미한 변경 건)

### ◆ 주요내용

- 벽체 내단열 적용 시 화장실 등 타일 공사가 필요한 실에 대해 단열을 미적용하여 사업변경을 신청함.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변경계획서 검토 결과, 단열 미적용 부위의 열교현상 발생 우려로 조치 요청  
 ☞ 내단열 미적용 부위 안쪽으로 단열보강 추가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변경 승인(경미한 변경)**



최초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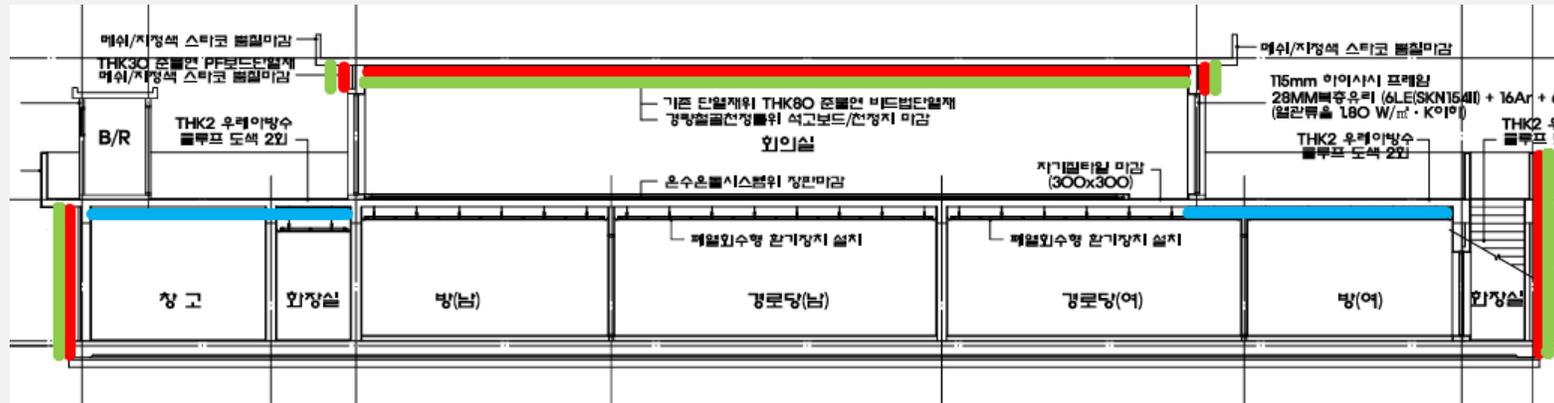
조치(안)

# 사업변경 사례

▶ 동일지자체 내 사업비 잔액 활용으로, 법적기준 부적합 시공된 외벽 단열 보강 재시공 사례

### ◆ 주요내용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벽체 및 지붕 단열공사 수행하였으나, 열관류율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동일지자체 사업비 잔액으로 단열보강 신청



단면도(—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 ◆ 심의결과 (조건부적합)

- 벽체 및 지붕 마감 공사비가 보조금으로 중복 투입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변경 사례

## ▶ 동일지자체 내의 총 사업비 변동없이,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한 사례

### ◆ 주요내용

- A보건진료소에 전기사용량이 많아, 동일 지자체의 B보건진료소의 공사비 잔액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변경을 신청함.

구 분	필수공사 기술요소	
	당초(신청시)	변 경
A 보건진료소	창호공사, 지붕단열공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냉난방장치, 조명 (LED)	신청서의 모든 기술요소 적용 B보건진료소의 낙찰차액으로 태양광 공사 추가
B 보건진료소	벽체단열공사, 지붕단열공사, 창호공사, 고효율냉난방장치, 조명	신청서의 모든 기술요소 적용

### ◆ 심의결과 (적합)

- 타 보건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 내역은 동일하면서, 공사비 잔액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A보건진료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향상시키므로 사업변경이 적정함.

## 사업변경 사례

### ▶ 추가지원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한 사례

#### ◆ 주요내용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수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바닥난방 공사**를 신규로 추가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 바닥난방 공사 신규 적용에 따라 **건물 내부 마감공사**(벽체, 바닥, 천장 도배 및 붙박이장 교체) 추가 반영 시 추가지원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약 44.7%를 초과**하여 사업변경을 신청함.

\* 도배공사(856만원), 바닥마감공사(206만원), 천장마감공사(1,119만원), 붙박이장 교체 공사(1,172만원) 등

#### ◆ 심의결과 (조건부적합)

- 바닥공사 신규 적용에 의한 부대공사비 증액은 타당하나, 추가지원 공사비 30%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대공사 중 **붙박이장 교체 공사 비용은 추가 지방비로 총당하는 전제로 사업변경이 적합함.**

\* 붙박이장 교체 공사 비용 제외 시 추가지원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약 41%

## 사업변경 사례

### ▷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취소**한 사례

#### ◆ 주요내용

- A도서관의 경우, 공사 규모가 커 **내부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검토 시 그린리모델링 **사업기간 내 공사완료**가 불가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취소를 신청함.

#### ◆ 심의결과 (**적합**)

- 내부 사업 수행 절차에 따라 사업기간 내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므로 **사업취소는 적합함**.
- 다만, 단순취소에 해당하여 추후 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적용함**.

## 사업변경 사례

### ▷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취소** 할 경우

####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사항

1. 대상 선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상 선정 이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3. 대상 선정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대상 선정 이후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의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사항'의 경우, **패널티 미적용**

## 사업변경 사례

### ▷ 그린리모델링 배점 또는 가점 사항 미이행한 경우

#### ◆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당시 ‘창호 기밀 공사’를 수행하기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 중 기밀 공사를 누락하여 준공하였음.

#### ◆ 심의결과

- 창호 주변 기밀 공사의 경우, 벽체 마감 공사 완료 부분 철거 필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시공성 저하 및 기밀 공사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기밀 공사 수행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임의 사업변경으로 해당되어 추후 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적용**함.

※ 2024년 사업의 경우, 창호기밀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사업비 반납은 없으나, 2025년 사업은 기밀공사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사 미이행시 해당 비용에 대한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변경 사례

## ▷ 그린리모델링 배점 또는 가점 사항 미이행한 경우

### ※ 창호 기밀 시공 세부기준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둘레)에 기밀 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층두께(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 기능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 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가능



출처: 팀마스터 블로그

## 사업변경 사례

### ▷ 그린리모델링 배점 또는 가점 사항 미이행한 경우

#### ※ 사업 변경 시 고려사항(배점·가점사항)

- 그린리모델링 최소 조건<sup>1)</sup> 또는 사업 신청 시 가점<sup>2)</sup>을 받은 사항에 대해 공사 미이행 시 패널티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검토 필요

####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최소 조건(전체 건물 대상)

: 필수공사 항목 중

####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점사항(신청 건물 대상)

: 창호·배관 기밀공사 적용

: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 추가지방비 투입

: 선도기술 적용

# 감사합니다

